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면제 도입〉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0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제220751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면제 도입 (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2
※ 참고자료	8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75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1시간 면제 도입

(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¹⁾에 대한 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만 허용됨) 및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²⁾의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퍼센트 이상 감면에 추가하여 최초 1시간 이상은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하며(「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2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 및 설치 주체

구 분	내 용	설치주체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민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행	개정안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u>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u>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 ----- ----- ----- ----- ----- ----- ----- ----- <u>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u>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u>	② ----- ----- ----- ----- ----- ----- <u>---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50% 이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공영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⁴⁾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⁵⁾에 따른 것으로 보임. (참고1·참고2 참조)

3)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 2019년 601,048대 → 2024년 2,746,655대 (약 5.6배 증가)

5)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화(2021.1.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 총주차대수의 5% 이상(신축건물), 2% 이상(기축건물)

이에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최초 1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제도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강화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책에 고려되는 주차장 공급 실태, 교통혼잡도, 교통정책 추진방향, 지방재정, 감면 우선순위⁶⁾ 등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나 감면 수준에 관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과 권한의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정안과 같이 충전

6)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다자녀가구, 병역명문가, 효행표창수여자,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수도권전철 환승자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감면혜택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참고1. 참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전국 공영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관리 재원에 충당되는 주차장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안 제9조 및 제14조의 개정내용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경형자동차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안이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50% 이상)을 「주차장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면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자율적 지방재정 운영, 주차장 확충·유지관리 재원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수원시

상위법을 통한 구체적인 감면 명시는 지역별 운영현황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지자체의 입법 자율성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음.

7) 서울시의 경우, 2024년도 직영 공영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적용된 감면분은 33억 6,400만원으로 시간주차 총수입금 151억 9,900만원 대비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참고3. 참조)

(3) 안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방안은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시간 주차 유발로 인한 회전을 저하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우려됨.

(4)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시간을 고려한 일정시간 주차요금 감면은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요 감면 현황

(단위 : %)

구 분	서울 특별 시	부산 광역 시	인천 광역 시	대구 광역 시	대전 광역 시	광주 광역 시	울산 광역 시	세종 시	제주 도
지자체 소유 자동차	감면 가능	면제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임산부	-	50	면제	-	-	-	50	50	50
긴급자동차	-	-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장애인	80	50	80	50	50	50	50	50	면제 50
국가유공자	80	50	80	50	50	50	50	-	50
고엽제후유증환자	80	50	80	50	50	50	50	-	50
의사상자	80	-	-	50	-	-	-	-	50
독립유공자	80	50	-	-	-	-	-	-	-
경형자동차	50	50	60	60	50	60	60	50	50
환경친화적자동차	50*	50*	50*	60*	50*	50*	50*	50	50*
외교관 자동차	면제	-	-	-	-	-	-	-	-
모범납세자	1년 면제	1년 면제	1년 면제	1년 면제	1년 면제	1년 면제	1년 면제	1년 50	1년 면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0	50	80	-	-	50	50	-	50
다자녀	50	50	50	50	50	50	60	-	50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50	-	-	-	50	-	-	-	-
전통시장 이용 차량	50	-	-	50	50	50	50	1시간 전액 감면	-
보훈대상자	50	-	80	-	50	-	-	50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50	-	50	-	-	-	-	50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50	50	50	50	-	50	50	-
병역명문가	20	50	80	50	-	-	-	50	-
효행 표창 수여자	-	3년 면제	-	-	-	-	-	-	-
환승공영주차장 주차 후 수도권전철로 환승	-	-	50	-	-	-	-	-	-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	-	50	-	-	-	50	50	-	-
점심시간대 주차차량	-	-	-	-	-	-	-	50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	-	-	-	-	-	-	-	50

* 충전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 1시간 범위내 주차요금 면제 현황

-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등 25개 구*, 부산시, 부산시 강서구 등 16개 구·군, 인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7개구, 대전시**, 대전시 대덕구 등 3개 구(유성구, 중구 제외), 울산시, 울산시 남구 등 5개구(울주군 제외),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 등 5개 구, 수원시***, 부천시, 안동시, 예천군, 경주시, 김해시, 익산시, 창원시**, 횡성군, 제주도 등

* 양천구 공영주차장 1시간 30분 면제, ** 대전시·창원시청사 부설주차장 2시간 면제

*** 수원시 공영주차장 최초 2시간 면제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3**공영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액 현황 (2024년)**

(단위: 천건, 백만원, %)

구분	시간주차 수입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건수(천건)	총액(a)	건수(천건)	금액(b)	비율(c=b/a)
서울(직영)	2,394	15,199	643	3,364	22.1
서울 성동구	1,368	4,797	344	1,252	26.1
인천 부평구	2,064	2,512	136	141	5.6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태양광 등)의 1시간 면제 및 50% 감면 합산

※ (출처)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